

의안번호	제 1046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6월 3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6
----------	------

제출연월일 : 2022년 6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소비자권의 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일부개정

2. 주요내용

- 피해구제처리의 신청에 관한 인용조문 변경(안 제19조)
- 소비자권익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안 제27조)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28조~제29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30조~제31조)
- 위원회의 운영 및 의견 청취(안 제32조~제33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법 제25조”를 “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소비자권익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8조를 제36조로 하고,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도 소관 조례 또는 제도의 소비자 지형성 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
5.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
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2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물가안정목표제의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국장, 농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소비자단체의 대표·임원 등 소비자 보호 또는 물가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2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계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3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3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피해구제처리의 신청) 소비자는 센터 또는 <u>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서신, 방문 등에 의하여 피해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u></p>	<p>제19조(피해구제처리의 신청) -- ----- <u>법 제29조</u>----- ----- ----- ----- -----.</p>
<p><u>제27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u></p> <p>① <u>도지사는 소비자권익증진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1. <u>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시책에 대한 사항</u></p> <p>2. <u>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u></p> <p>3. <u>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써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② <u>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경제정책</u></p>	<p><u>제27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u></p> <p><u>도지사는 소비자권익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u></p>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신 설>

제2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도 소관 조례 또는 제도의 소비자 지형성 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
5.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

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2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물가안정목표제의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국장, 농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 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
원

2. 소비자단체의 대표·임원 등
소비자 보호 또는 물가 문제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2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
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
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신 설>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8조 (생 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계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3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3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36조 (현행 제28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⑥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견청취 등) ① 정책위원회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권고·공표 등
4.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 및 기능·목적에 맞게 규정 정비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 위원 구성·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3. 관련조문

- 안 제28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4. 추계결과

- 산출과정
 - 위원회 참석위원 연간 수당 : 130,000원*10명*연3회 = 3,900천원
 - * 출석수당 : 기본수당(2시간 이내) 100천원, 초과수당(2시간 초과) 30천원
- 산출과정 : 연간 3,900천원,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19,500천원 소요
-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참석위원 수당	19,500	3,900	3,900	3,900	3,900	3,900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정 선 미(220-3210)